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26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.

- 1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선박 항행의 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2)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
- 3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경우	법 제31조제2항 제1호	150
나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3항 제1호	50
다.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3항 제2호	50

라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31조제2항 제2호	150
마. 법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 제1호	360
바. 법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 제2호	250